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정보 고지 근거 마련〉

■ 손명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398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손명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398호)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정보 고지 근거 마련 (안 제58조제1항제1호)	2

□ 손명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398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손명수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6. 22.
3. 회 부 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자동차의 성능·상태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가격의 조사·산정 관련 정보의 경우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매매업자가 객관적인 가격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하고자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적극적인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차매매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1호).

Ⅲ. 검토의견

1.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정보 고지 근거 마련(안 제58조제1항제1호)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을 고지할 때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함께 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 ----- ----- ----- ----- ----- ----- ----- -----.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	1. ----- ----- ----- -----

· 상태점검”이라 한다)한 <u>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후단 신설></u> 2. ~ 4. (생략) ② ~ ⑩ (생략)	-----<u>내용 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이 경우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u>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가. 검토의견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¹⁾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 중 제1호는 침수 사실 및

1)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이라 한다)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3.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4.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4호는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제도는 개별 차량의 성능 및 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가격정보를 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2016년에 도입된 제도로, 기계분야 차량기술사 또는 진단평가사 자격²⁾을 보유한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³⁾가 가격을 산정하며, 관련 수수료는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이 고지된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받을 수 있음⁴⁾.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8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수인에게 가격조사·산정서를 발급한 실적이 없어,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자동차 시장은 매년 약 250만 대가 거래되고 2025년에 88만 대를 수출하는 등 우리 경제의 중요 산업이자, 높은 자동차 가격으로 인해 신

2) 2025년 기준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 취득자는 9,621명(1급 1,272명, 2급 8,349명)임.

3)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5(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의 자격 요건)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산정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교육을 이수한 「기술사법」 제3조에 따른 기계분야 차량기술사
2.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 평가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등)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차 구매가 부담이 되는 서민 등의 실생활과 밀접하지만, 국민의 신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⁵⁾.

현행 제도상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의무적으로 고지되지만, 자동차 가격 조사·산정 내용은 매수인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면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가 차량의 상태와 가격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을 고지할 때, 자동차매매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함께 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다음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중고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중고자동차 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 구조적으로 내재된 시장으로, 구매자는 차량의 물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움. 현행 제도는 성능·상태점검 결과와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어, 차량의 물리적 상태가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소비자가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5) 보도자료, 「안심하고 거래하는 중고차 시장 만든다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추진」, 국토교통부, 2026. 8. 6일자

개정안은 성능·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가격 정보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중고차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발적 정보 제공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현행법상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수수료 청구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여, 투명한 거래를 지향하는 자동차매매업자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적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임.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발적으로 가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셋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중고차 거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음.

중고차 거래에서 가격 관련 정보의 불투명성은 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성능·상태점검 결과와 연계된 가격 정보의 통합 제공은 거래 당사자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중고차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반면, 다음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일반 국민이 자동차 시세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수단이 있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365’의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⁶⁾ 및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들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가격 분석 서비스⁷⁾를 통해서도 일반 국민이 시세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 수수료를 부담하는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음.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에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의 비용이 수반되고, 현행 시행규칙상 해당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발적 제공이 활성화될 경우 관련 비용이 매매 수수료 등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음.

한편,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개정안의 조문은 제58조제1항제1호만을 개정하고 같은 항 제4호(매수인이 원하는 경

6) 2021.7월부터 제공 중이며, 동일 차명·형식·연식 차량의 최근 1년간 양도증명서상 신고된 매매 평균금액 및 이전등록 건수를 확인할 수 있음.

7)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사고이력 등을 바탕으로 가격분석 서비스 또는 유사한 차량의 매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가격정보를 확인 가능함.

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는 그대로 두고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은 중고차 거래에서의 정보 비대칭 해소와 소비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일반 국민이 자동차 시세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이 있고,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제도는 중고차 가격 정보가 부족한 시기에 도입된 제도이나, 현재 플랫폼 등 인터넷에서 가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도입 이후 최근 몇 년간 매수인 요청·제공 사례가 거의 전무한 실정임. 일부 전문가는 해당 제도가 현재 시장 여건상 실효성이 떨어져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

활용가치는 낮는데 가격조사에 대한 수수료 부담은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소비자의 불필요한 부담만 증가할 우려가 있음.

매매업자가 가격·조사 산정자에게 의뢰하는 구조상 결국 매매업자의 판매희망 가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신뢰도 문제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통해 발표한 투명한 가격표시제, 성능점검 신뢰도 강화 등이 실행되면 중고차 시장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현행 제58조제1항제4호는 매수인이 원할 경우 매매업자가 가격조사·산정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 제안이유는 매매업자의 판단에 따라 조사·산정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어 법 내용 간 모순이 발생하며, 이는 가격조사·산정 제도의 완전한 의무화를 위한 전 단계 조치로 판단됨.

현재 자동차365, 플랫폼 사이트 등을 통해 실거래가 기반 시세 정보가 이미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조사·산정 제도를 준 의무화할 경우 불필요한 비용만 발생시키고, 실제 활용사례도 없는 무용한 제도임. 매매업자가 의뢰하는 구조상 판매예정가격 이하로 산정되기 어려워 오히려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소비자를 기망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중 중고차 가격 관련 피해구제 비중도 0.2%에 불과해 제도의 준 의무화 필요성이 낮음(참고2 참조).

3)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중고자동차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찬성하지만,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할

필요 있음(참고2 참조).

4)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제도는 중고자동차 시장의 투명성 및 신뢰도 향상 및 가격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의무화가 타당하나, 현 개정안은 성능·상태점검 또는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대안으로 찬성함(참고2 참조).

5)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결과를 기초로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사고·수리 이력, 용도변경, 주요장치의 상태 및 옵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서를 함께 제공할 경우, 소비자는 차량의 상태뿐만 아니라 그 상태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참고2 참조).

6) 한국자동차공정정보협회

소비자의 알권리 및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고려하여 찬성 의견임.

7) 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가격조사·산정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중고자동차 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8) 차량기술사회

개정안의 취지인 중고차 거래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 및 거래 투명성 제고 목적에 전적 공감하며 적극 찬성함(참고2 참조).

문 의 처
02)6788-5575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이라 한다)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3. 제65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4.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제58조의5(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의 자격 요건)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산정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교육을 이수한 「기술사법」 제3조에 따른 기계분야 차량기술사
2.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 평가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5(자동차가격 조사·산정 교육 등) ① 법 제58조의5 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방법
2.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관련 법령
3.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실무
4. 직무윤리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교육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자동차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학교
2. 한국교통안전공단
3.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④ 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을 고지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

장에서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의 발급은 해당 기록부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자동차성능·상태점검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지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법 제58조 제4항에서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3.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

4.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5. 자동차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

6. 매매종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

7.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매매유형에 관한 사항

가. 직접매도: 자동차매매업자 소유의 매매용 자동차를 직접 매도하는 경우

나. 매매알선: 다른 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이 경우 매매알선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에는 그 상호도 포함한다.

⑤ 법 제58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라 한다)는 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하려는 장소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

⑥ 자동차매매업자는 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고지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가 제5항에 따른 장소에서 해당 자동차의 가격을 조사·산정하고 그 조사·산정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고지에는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 범위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23조의8(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의4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를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해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에 포함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에 대한 보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보증범위를 자동차인도일부 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제출기관	의견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매매사업자연합회	<수용 곤란> ○ (법률 개정안 내용 모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4호에서는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조사 산정한 내용을 매매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매매업자가 자동차가격·조사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의뢰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법 내용간 모순 발생 - 결국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을 완전 의무화하기 위한 前단계로 보임 ○ (효용성이 낮고 특정단체 이익을 위한 제도) 현재 중고차 가격은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연합회 홈페이지, 플랫폼 사이트(엔카, KB차차차 등)에서 실제 거래가격을 기반으로 시세 정보를 제공 중이며, - 중고차 가격은 자유롭게 시장에서 정해지는데 가격·조사 산정의 준 의무화에 따라 매매업자와 소비자의 수수료 등 비용만 발생 예상 -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18.7월부터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에 가격조사·산정서를 서식 통합한 이래 기록부 서식만 복잡하여 소비자 불편, 불만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활용사례도 없는 무용한 제도임 * '18.7부터 '23.2까지 연합회 소속 매매업자가 가격조사·산정한 내용을 전송한 내역은 전무(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8항 및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1호 근거) - 현실적으로도 가격조사산정을 매매업자가 의뢰하면, 의뢰자인 매매업자의 판매예정가격보다 낮게 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시장의 자율적 가격 구조를 왜곡하여 소비자를 기망하는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 높음 ○ 2021년「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가격 관련 피해구제 건은 전체의 0.2%에 불과하며 이를 준 의무화할 필요성 낮음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제출기관	의 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매매사업자연합회	<일부 수용> ○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중고자동차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찬성하지만, - 개정안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이라는 표현은 자동차성능·상태기록부 고지의무를 대체하거나 두 가지를 모두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 기존 제58조제1항제1호는 유지하고 제58조제1항제4호의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매수인과 자동차매매업자(중사원을 포함한다)가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자동차성능·상태점검한 내용의 고지 의무는 유지하면서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은 매수인과 자동차매매업자의 의사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법 조문의 해석을 일치시키고 오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성능상태점검협회	< 동의> ○ 자동차가격조사·산정제도는 중고자동차 시장의 투명성 및 신뢰도 향상 및 가격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의무화가 타당하나, - 현 개정안은 성능·상태점검 또는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대안으로 찬성함 - 자동차가격조사·산정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성능·상태뿐 아니라 그 상태를 반영한 가격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가능 - 차량상태에 따른 가·감가액이 제시되면 매수인은 최소한의 판단기준을 확보 가능하며 판매가격에 대한 불신을 줄이고 적절한 품질의 차량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하는 시장환경 조성 예상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성능상태점검협회	< 동의> ○ 최근 중고자동차 거래는 플랫폼과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차량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게시된 사진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만으로 구매결정을 하는 상황임 - 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결과를 기초로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사고·수리 이력, 용도변경, 주요장치의 상태 및 옵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서를 함께 제공할 경우, 소비자는 차량의 상태뿐만 아니라 그 상태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출기관	의 건
한국자동차공 정정보협회 *성능상태점검협회	< 동의 > ○ 소비자의 알권리 및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고려하여 찬성 의견
전국자동차성 능평가협회 *성능상태점검협회	< 동의 > ○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가격조사·산정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중고자동차 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사)차량기술 사회 * 국토부인가 비영리법인	< 동의 > ○ 개정안의 취지인 중고차 거래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 및 거래 투명성 제고 목적에 전적 공감하며 적극 찬성 ○ 자동차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는 떨어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선제적으로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가격조사·산정내용을 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면 소비자에게 합리적이고 통합적 정보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추가적으로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가격 산정 결과간의 기술적 정합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향후 함께 마련된다면 실효성이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 구체적 방안으로 가격조사·산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하위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나아가 국가최고기술자격인 차량기술사를 비롯한 진단평가사 등 전문가 그룹이 직접 참여하거나 그 결과를 독립적·전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추가 조성 필요